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96
----------	-----

2021. 4. 30.(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4월 23일

－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가. 제안사유

- 「주거기본법」 제정(시행 2015.12.2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안 제3조)
-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 시행 (안 제4조)
- 주거실태 조사 (안 제5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안 제6조~제12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거 정책과 도의 주요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주거복지나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 이 조례안 저소득층, 청년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 69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이옥규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1년 4월 13일

#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6
----------	-----

발의연월일 : 2021년 4월 13일

발 의 자 : 이옥규, 임영은,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연철흙, 박우양

## 1. 제정이유

- 「주거기본법」 제정(시행 2015. 12. 2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입법예고 : 2021. 4. 2. ~ 2021. 4. 12.

##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북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주거종합계획 등

제3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 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정비 및 노후주택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2항에서 정하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 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도정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도록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제출하는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심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다른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등

제14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과약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  
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주거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목표 및 방향 도출, 추진과제 제시와 실행방안 제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10년 단위 계획 심의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2. 비용 발생 요인

-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비용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수당

## 3. 관련조문

- 안 제3조(주거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충청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충청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비용은 일시적 발생 예상, 추계는 2021~2025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용역비용 발생,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총15명의 위원 중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으로 구성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심의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위촉직 13명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

- 지급단가 : 심의위원 여비 및 수당 지급기준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당 및 여비 규정 적용

#### 나. 추계결과

- 산출과정 : 참고 붙임 1
  - 학술연구용역 1식 200,000천원
    - \* 연구용역 = 인건비(132,000천원) + 경비(29,000천원) + 일반관리비등(39,000천원)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00천원\*13명\*1회=1,300천원
- 산출결과 : 2022년 200,000천원 및 2023년 1,3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출	-	200,000	1,300	-	-	201,300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	200,000	-	-	-	200,000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	1,300	-	-	1,300

# 붙임1

## 《비용추계서》

### ○ 연간 소요비용

(단위: 천원)

항목		산출기초	금액	비고
합계			201,300	
용역비	인건비	책임연구원 : 3,245×1명 ×10월=32,450천원 연구원 : 2,488×3명 ×10월=74,640천원 보조원 : 1,247×2명 ×10월=24,940천원	132,000	
	경비	여 비 : 9,000천원 유인물비 : 7,000천원 공청회, 보고회 : 7,000천원 전산소모품, 통신비 등 : 6,000천원	29,000	
	일반관리비· 이윤·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 9,000천원 이윤 : 12,000천원 부가가치세 : 18,000천원	39,000	
위원회 수당		위원회 심의 수당 : 100천원×13명=1,300천원	1,300	